

점용료등 산정기준(제42조제1항 관련)

구 분	산 정 기 준												
1. 공작물의 설치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	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/100												
2. 토지(하천부지)의 점용	<p>가.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: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.5/100</p> <p>나.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: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.5/100. 다만,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립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다. 광업(골재채취는 제외한다)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: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.5/100. 다만, 하천구역 내의 토석(土石)·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.</p> <p>라.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: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.75/100</p> <p>마.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: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.5/100</p> <p>바. 야적장을 위한 점용: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/100</p> <p>사.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: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.5/100</p>												
3. 하천시설의 점용	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.												
4. 선박 등의 운항	<p>가.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(차량도선은 배액)</p> <p>1) 갑지: 월액 20,000원</p> <p>2) 을지: 월액 10,000원</p> <p>3) 병지: 월액 6,000원</p> <p>※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</p> <p>나. 5톤 이하 유선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지역등급</th> <th>동력선</th> <th>무동력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) 갑지</td> <td>월 100,000원</td> <td>월 50,000원</td> </tr> <tr> <td>2) 을지</td> <td>월 60,000원</td> <td>월 30,000원</td> </tr> <tr> <td>3) 병지</td> <td>월 20,000원</td> <td>월 1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/10 가산</p> <p>다.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. 다만,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.</p> <p>라. 고무보트 외에 「수상레저안전법」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,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.</p> <p>1)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: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</p> <p>2)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: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</p> <p>마. 부선(유선시설은 제외한다) 및 골재수송선</p>	지역등급	동력선	무동력선	1) 갑지	월 100,000원	월 50,000원	2) 을지	월 60,000원	월 30,000원	3) 병지	월 20,000원	월 10,000원
지역등급	동력선	무동력선											
1) 갑지	월 100,000원	월 50,000원											
2) 을지	월 60,000원	월 30,000원											
3) 병지	월 20,000원	월 10,000원											

	<p>1) 50톤 미만 : 월액 40,000원  2) 50톤 이상 ~ 100톤 미만 : 월액 50,000원  3) 100톤 이상 ~ 200톤 미만: 월액 70,000원  4) 200톤 이상 ~ 300톤 미만: 월액 90,000원  5) 300톤 이상 ~ 400톤 이하: 월액 110,000원  6)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,000원씩 가산</p> <p>바.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항만법」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(예선,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) 및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(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.</p> <p>사.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다.</p>
<p>5. 토석·사력의 채취</p>	<p>가. 해당 시·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·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/100</p> <p>나.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「골재채취법」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</p> <p>다.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·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·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.</p>
<p>6. 죽목, 갈대,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</p>	<p>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,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.</p>
<p>7. 스케이트장, 유선장·도선장 및 계류장(유·도선의 모선을 포함하며, 유선장·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)·운동장·풀장·대기장 및 탈의장(매점을 포함한다)</p>	<p>토지가격의 5/100</p>
<p>8. 그 밖의 점용 및 사용</p>	<p>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</p>
<p>※ 비고</p> <p>1.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2. 시·도지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3. 토지가격은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(토지가격비준표)를 사용하여 산출한다. 다만,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·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.</p>	

4.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/12년으로 하고,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/365년으로 한다.
5. 점용면적이 1㎡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총점용면적이 1㎡ 미만인 경우에는 1㎡로 본다.